



군보는 공문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제 482호 2015. 8. 31(월)

선 람	기 관 의 장

훈 령

- 진안군 훈령 제373호 (진안군 군보발행규정 일부개정규정)1
- 진안군 훈령 제374호 (진안군 부패행위 신고접수및 신고자보호 운영 규정)7
- 진안군 훈령 제375호 (진안군홍보물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13
- 진안군 훈령 제376호 (진안군 차량집중 관리 규정 폐지규정)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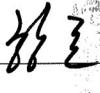
고 시

- 진안군 고시 제2015-69 (도로명주소 고시)21

회 말										
--------	--	--	--	--	--	--	--	--	--	--

발행 진 안 군 (편집 행정지원과(063)430-2838

진안군군보발행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진안군수이 

2015년 8월 31일

진안군 훈령 제 333호

진안군군보발행규정 일부개정규정

진안군군보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책기획단장”을 “군보관리업무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발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한다.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보는 인쇄군보(군보의 내용을 종이에 인쇄한 책자)와 전자군보를 함께 발행한다.

④ 전자군보는 진안군 홈페이지(<http://www.jinan.go.kr>)에 게재한다.

제4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신는다”를 “게재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신는다”를 “게재한다”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는다”를 “게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도록”을 “게재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9조 중 “신는다”를 “게재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정책기획단장”을 “군보관리업무부서장”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신지아니”를 “게재하지 아니”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군보에 게재하려는 해당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원문을 작성하여 매월 10일, 25일 까지 군보관리업무부서장에게 그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행예정일 2일전까지 의뢰

하여야 한다.

② 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공고게재를 요구할 경우 사전에 공포·발령·고시·공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실·단·과·읍·면, 경찰서,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기타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에 배부하되”를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또는 필요한 기관·단체에 배부할 수 있으며”로 하고, “매년초에”를 “군보관리업무부서장이”로 한다.

제14조의 제목“(군보의 보관 등)”을“(군보의 보관 및 열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보를 배부받은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또는 필요한 기관·단체는 군보 1부를 1년간 일반 군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연 2회이상 지도”를 “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일반인이 전자군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온라인 전산망(진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군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보급방법) ① 군보관리업무부서장은 군보발행을 완료한 때에는 진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행사실과 함께 전자군보를 게재하고 필요 시 보급대상기관에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같이 통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군보를 발행한 날짜
2. 군보의 호수와 목록
3. 진안군 홈페이지에 전자군보를 올렸다는 사실
4.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보관리업무부서에 문의하라는 내용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군보게재의 효력) 군보에 게재된 사항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을 포함하여 3통을 10일, 25일까지 정책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책기획단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에 공포 또는 고시, 공고번호를 부여하고 군보발행 예정 호수와 년월일을 기입하여 주무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정책기획단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자치법규 공포대장, 고시, 공고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군보 발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군보배부기준) 군보는 실·단·과·읍·면, 경찰서,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기타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에 배부하되 배부 수량은 당해기관 또는 단체의 기구, 군보의 사용도 등을 참고하여 매년초에 결정한다.

제14조(군보의 보관 등) ① 군보를 배부받은 군산하 각급기관, 단체는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까지 군보관리업무부서장에게 그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행예정일 2일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② 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공고게재를 요구할 경우 사전에 공포·발령·고시·공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삭 제>

제12조(군보배부기준)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또는 필요한 기관·단체에 배부할 수 있으며 -----
-----군보관리업무부서장이--.

제14조(군보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군보를 배부받은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또는 필요한 기관·단체는 군보 1부를 1년간 일반 군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보관하여

②제1항의 비치 활용 상황에 대하여 군수는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연 2회이상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야 한다.

② -----
-----지도 -----.

③ 일반인이 전자군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온라인 진산망(진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군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보급방법) ① 군보관리업무부서장은 군보발행을 완료한 때에는 진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행사실과 함께 전자군보를 게재하고 필요 시 보급대상기관에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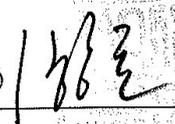
②제1항과 같이 통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군보를 발행한 날짜
2. 군보의 호수와 목록
3. 진안군 홈페이지에 전자군보를 올렸다는 사실
4.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보관리업무부서에 문의하라는 내용

제16조(군보게재의 효력) 군보에 게재된 사항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진안군 훈령 제374호

진안군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진안군수 이항로 

2015년 9 월 31 일



진안군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진안군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라. 진안군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

법으로 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렴의무) ① 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군수는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해당 부서의 장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원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안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소속 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본청 청문장에서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 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업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 공무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군수는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진안군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또는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포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진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등) ① 군수는 이 규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11조제5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군수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군수는 제7조제6항 및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적용)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홍보물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진안군수 이영근



2015년 8월 31일

진안군 훈령 제 3가 호

진안군 홍보물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진안군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보물을 효율적으로 제작·발간·배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홍보물"이란 진안군 본청 및 소속 기관, 읍·면(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대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발간하는 책자,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홍보물의 발간계획, 제작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안군 홍보물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홍보물 제작 및 역사·관광·홍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2. 제작할 홍보물의 디자인, 주제, 외국어 표기 등 전반적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작할 홍보물 1차 시안을 대상으로 자문하고, 자문결과 내용(개선, 보완 등)은 홍보물에 반영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진흥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

제7조(사전자문) ① 발행부서가 홍보물을 발간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자문하지 아니한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 및 업무편람 등
3. 법령에 따라 명칭이나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홍보물
4. 사업의 단순안내 등 자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홍보물
5. 최초 발간 시의 위원회 자문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홍보물
6.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군정홍보물 자문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발행부서에게 자문에 필요한 자료 제출,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자문요청) ① 홍보물을 발간하려는 발행부서는 발행 20일 전까지 자문요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홍보물 자문을 요구한 발행부서의 장은 제작개요와 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홍보물을 제작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서 접수된 안건 중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자문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하되, 자문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만 재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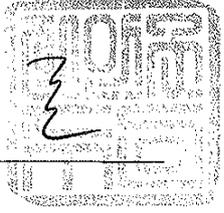
제12조(자문홍보물에 대한 조치) 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을 받은 홍보물에

[별지 제3호 서식]

군정홍보물 자문 대장

연번	등재일자	종 류	홍보물명	자문일자		주관부서
				일자	내용	

진안군 차량집중 관리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진 안 군 수 이 형 권 

2015년 8월 31일

진안군 훈령 제 376 호

진안군 차량집중 관리 규정 폐지규정

진안군 차량 집중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8. 18.

진 안 군 수



○ 도로명주소 : 진안군 주천면 안정길 140-11번 외 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063-430-22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08.1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1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2352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능금로 95-33	20090202
2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474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진용로 1025	20090202
3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575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정주천로 674-38	20090202
4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887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강촌길 28-9	20090202
5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233-13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구례길 53-127	20090202
6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321-11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노래재로 75-7	20090202
7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 343-4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백장로 181	20090710
8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95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안용로 363	20090710
9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347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안정길 140-11	20090202
10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533-4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덕천로 56-6	20090202
11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646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진무로 98-4	20090710
12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689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구봉산길 6-11	20090202
13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971-1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학동길 74-6	20090202
14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974-6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서평로 191	20090202
15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959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중배실길 32-59	20090202

도로명주소고시일

20150817
20150810
20150810
20150810
20150806
20150812
20150806
20150804
20150804
20150807
20150817
20150804
20150807
20150804
20150804

도로명부여사유

<p>린 법정리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호산리와 능산리를 병합하여 능산과 금곡의 이름을 따서 능금리라 하였으며 이 법정리명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한다.</p>
<p>진안읍에서 용담면을 연결하는 795번 지방도 노선으로 해당 지역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을 부여함.</p>
<p>정천면과 주천면을 연결하는 725번 지방도 노선으로 해당 지역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을 부여함.</p>
<p>충남 금산군, 완주군, 진안군의 삼군 경계로 고냉지대이고 마늘이 유명한 지역으로 행정리명인 강촌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함.</p>
<p>고 처음에 마을 명칭을 구룡이라 하였으나 현재의 위로 마을을 옮겼으며 임진왜란때의 피난지로서 예절 바른 마을이라 해서 마을 명칭을 구례라 칭하고 마을 뒷산이 진안 8명당 중 제1명당이라는 옥녀봉이 있는 곳으로 옥녀참가란 명당이 있다고 하여 노래재라고 불리웠으며, 이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한다.</p>
<p>행정구역명(진안군 백운면, 장수군 장수읍)을 반영하여 백장로로 명명</p>
<p>안천면에서 용담면을 지나 충남 금산으로 넘어가는 국도 13호선 노선으로 지역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을 부여함.</p>
<p>당이 있었는데 4월 초파일을 기하여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공을 드리면 마음이 안정되었다 하여 안정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한다.</p>
<p>이라 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동, 장재동, 추동, 신동, 안방리, 판치리, 지소리, 내동을 병합하여 덕천리라 하였으며, 이 법정리명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한다.</p>
<p>행정구역명(진안군,무주군)을이용하여진무로로명명</p>
<p>천면 운봉리, 정천면 봉학리와 갈룡리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산봉우리가 아홉개여서 구봉산이라 칭하였으며, 이 산의 이름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한다.</p>
<p>맞바우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뒷산에 학이 살았다하여 학동이라 불리웠으며, 이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함.</p>
<p>마령면 계서리와 평지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49, 55호선 노선으로 법정리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을 부여함.</p>
<p>이 마을 북쪽에 위치한 산에 많은 배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배꽃이 떨어진 삼락지중의 중간 마을이라 중리라 불리웠으며, 이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한다.</p>

